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4829 취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redacted]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redacted]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6473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8. 원고의 B은행 계좌(C)에 대하여 한 예금채권 압류처분, 2017. 10. 23. 원고의 D조합(서울) 계좌(E)에 대하여 한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1쪽 제21행과 제12쪽 제1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이는 피압류채권인 동산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한편, 피압류채권인 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처음부터 대여금고 내에 보관물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체납처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압류집행과 동시에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해당 압류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처럼 당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압류처분에 대하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이와 같이 압류집행과 동시에 종료되고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보는 이상, 그와 같이 종료되어 별도의 효력이 없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고의 압류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소정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고의 압류에 대하여 압류집행과 동시에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별도의 효력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소정의 '압류'에 의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시효중단효가 계속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지방세징수권 시효중단사유로서 '수색'에 압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2012. 5. 21.자 대여금고 개봉 행위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98조(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가 준용하는 구 국세징수법 제26조(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의 '수색'으로서 지방세징수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피고는 2012. 5. 21.자 대여금고 개봉 행위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방세징수법은 2016. 12. 27. 제정되었으므로 2012. 5. 21. 당시 시행되던 법령인 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 제98조가 준용하는 구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세무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진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기본법이 준용하는 구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8조는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색절차의 진행에 일정한 증인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의 수색은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로서 시효완성을 다투는 피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2. 5. 21. 대여금고 개봉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당시 수색절차로 나아갔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대여금고 개봉 행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12,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인도)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끝.